

## ◎환경부 공고 제 2006-224 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명하고, 물 환경조사, 물환경 보전·복원조치,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량행위 투명화 등 법령 정비사항, 규제개혁전략과제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법령 변경 및 물환경의 정의 신설(제명 및 안 제2조제1호)

(1)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2) 법의 명칭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물환경의 정의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공공수역의 생물적·비생물적 요소를 총칭하도록 정의하여 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4대강 이외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 근거 마련(안 제4조)

종전의 총량규제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도록 총량관리로 하고, 기존 4대강법에 따른 대상 이외의 오염우려지역에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안 제10조의2)

공공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물환경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수위해성이 우려되는 때에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물환경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0조의3)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물환경정책 심의기구인 물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전문가, 민간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물환경 보전·복원조치 및 권고 등(안 제19조의2)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환경을 보전·복원하는 조치를 하거나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및 수변생태구역 관리공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배후습지, 유수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이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의 지원을 위하여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을 둬.

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 제한 권고(안 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권리·의무 승계(안 제53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함.

자. 규제개혁 전략과제 및 법령정비사항 등의 반영  
(1) 주요 점오염원에 대한 오염물질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규제개혁 전략과제).

(2)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폐수배출업의 등록 취소사유를 구체화함(법제처 법령정비사항).

## ◎환경부 공고 제 2006-211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의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 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별표 2 및 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안 제11조)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별표 2 비고 4)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 (별표 2)

####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이하 (2) 500㎖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이하 (2) 500㎖초과 개당 56.2원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이하 (2) 500㎖초과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이하 (2) 30㎖초과 100㎖이하 (3) 100㎖초과	개당 8.3원 개당 12.4원 개당 25.5원
3. 부동산액	부동산액	ℓ 당 189.8원
4.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5.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8.2원
6.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27.8원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합성수지 투입 (단,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1차 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당 384원  (㎏당 328원)

※ 비교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의 개정요율 및 금액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100분의 20, 2010년 및 2011년에는 100분의 60, 201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다만, 현행 부과요율이 연도별 인상요율 보다 높은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 제21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환경건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등록의 신청절차, 환경건설팅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기한 설정( 제6조의3)

- (1) 현행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절차를 이 규칙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 신기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도록 함.
- (3) 만원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기술인증기간의 단절을 방지하며,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기기 확대( 제13조제1항)

- (1) 수소이온농도(pH), 부유물질량(SS)측정기기는 아직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정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정도관리 대상에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함.
- (3)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장방문 감시체제에서 원격감시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지도·점검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절차 및 신청구비서류(제33조의8 및 제33조의9)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자원부령 제351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별표 1의 총 발열량을 적용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2. 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 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3.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 대상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제9조의3제1항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

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4.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11조의3(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를 포함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에너지진단 수수료) 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한다.

제9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공포(’03.12.31)되고, ’06.1.1일부터 제작자동차에 적용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 20, 나. 5) 비고6에서 적용하는 유예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적용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규정함(안 시행규칙 별표 1 2) 비고 제4호). ◀